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562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(안 제8조).
- 나.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사회혁신 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촉진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중소기업기본법」및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0. 3. 5.~3. 25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「중소기업기본법」"을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1조제6항 중 "사회혁신담당관"을 "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)	제8조(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) ①
① 시장은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	
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, 「민법」에	
따른 비영리법인, <u>「중소기업기본법</u> 」	, 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]
에 따른 중소기업, 「서울특별시 사	
회적기업 육성 조례」에 따른 사회	
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, 「협	
동조합기본법」 또는 「소비자생활	
협동조합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	
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	
고자 하는 단체, 법인 및 기업을 제	
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	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	
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	
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	
②· ③ (생 략)	②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) ①	제11조(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) ① ~
~ 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	6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	
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	<u>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</u>
<u>사회혁신담당관</u> 이 된다.	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전환도시담당관 장준호(☎ 2133-7993)